

[] 화폐성외화자산등 []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신 고 인	법 인 명	사업자등록번호
	본점 소재지	
	대표자 성명	
	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	
금융회사 등의 통화 선도·통화스왑·환 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	[]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	
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 보험 평가방법 신고	[]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	
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	[] 개별법 [] 이동평균법	[] 총평균법 [] 시가법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·제2항·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(특별계정)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,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. 다만,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